포커스

2012 글로벌 연금지수와 우리나라의 과제

이상우 수석연구원

요약

호주에서 발표한 글로벌 연금지수(MMGPI)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종합지수 44.7점, 16위, D등급의 저조한 평가를 받음. MMGPI는 공·사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포함)과 자산 및 저축 등의 평가항목에 대해 국가별 연금시스템의 적정성, 지속가능성, 완전성을 평가하여 산출한 지수임. MMGPI 평가결과 연금시스템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의 향후 과제는 고령자 ·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사적연금 가입률 · 가계 저축률 개선, 효율적인 자산배분을 통한 노후소득재원 효율성 확보(적정성 개선), 인구구조 개선을 통한 기여자 · 수급자 비율 개선, 연금 지급 의무화, 퇴직급여제도 일원화(지속가능성 개선), 사적연금의 제3자 감시기능 강화, 퇴직연금 수탁자 책임 강화, 퇴직연금 수급권 강화, 가입자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완전성 개선) 등임.

■ 호주금융연구센터(ACFS)[1]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머서(MERCER)는 올해 처음으로 평가대상에 한국이 포함된 제4회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이하 MMGPI)를 2012년 10월에 발표함.

- MMGPI(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는 양 기관이 호주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2009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세계 연금시스템 평가 지수임.
- MMGPI는 공 · 사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포함)과 자산 및 저축 등의 평가항목에 대해 국가별 연금시스템의 적정성, 지속가능성, 완전성을 종합평가하여 산출한 지수임.
- MMGPI는 세계 주요 국가의 연금 시스템을 비교하여 각국의 연금 정책당국 및 관련 기관이 연금 시스템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둠.
- 평가대상 국가는 2009년 호주, 캐나다, 칠레, 중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2012년에는 한국과 덴마크를 추가하여 18개 국가임.

1) 호주금융연구센터(The Australian Centre for Financial Studies, ACFS)는 멜버른대학, 모나쉬대학, RMI대학, 호주 증권금융연수원이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의 투자를 받아 2005년에 설립한 비영리 컨소시움 형태의 연구단체임.

MMGPI 평가체계는 연금시스템의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분류된 40여 개 평가 항목으로 이루어짐.

- 세 가지 축은 적정성(Adequac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완전성(Integrity)으로 구성되며,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됨.
  - 적정성은 은퇴 후 지급하는 연금급여 수준 등을 평가하며 40%의 가중치를 부여
  - 지속가능성은 연금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체계 등을 평가하며 35%의 가중치를 부여
  - 완전성은 공적연금을 보완할 사적연금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규체계의 수준 등을 평가하며 25%의 가중치를 부여
- 세 가지 축은 이와 관련된 40여 개 하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국가별 종합지수는 각 축별로 0에서 100사이 평가된 점수가 가중 평균되어 산출됨.

〈표 1〉 MMGPI의 평가체계와 평가 항목

평가축	가중치	내용	주요 평가 항목
① 적정성	40%	연금액이 은퇴자의 노후생활에 적정한 정도	소득대체율과 저축률, 개인연금의 세금혜택, 연금지급 개시 연령, 퇴직금의 통산성, 이혼 시 처리, 주택소유 여부, 연금자산의 투자대상 등
② 지속가능성	35%	현재 지급하는 연금의 장기 유지 가능성	전체 노동인구에서 60세 전후의 노동인구 비율, GDP대비 연금자산, 평균수명과 공적연금의 지급개시 연령 비교, 연금 기여율, 정부 부채, 자산, 기여도, 인구통계, 정부부채 등
③ 완전성	25%	사적연금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요건 구비 정도	공적연금 이외의 제도 개선, 연금자산의 법적 개선,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제도 유무, 가입자와 소통 등

최종 평가결과 종합지수는 〈표 2〉와 같이 점수에 따라 A~E의 등급으로 분류되어 표시됨.

- A등급은 은퇴급여 지급이 지속가능하며, 우수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존재함을 의미
- B+, B등급은 건전한 구조 및 특성을 보이나 몇 가지 개선 여지가 있음을 의미
- C+, C등급은 건전한 구조 및 특성을 보이나 주요 리스크 요인과 단점을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됨을 의미
- D등급은 몇몇 장점이 있으나, 필수 부분이 부재하거나 주요 약점이 존재하여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됨을 의미
- E등급은 연금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초기단계임을 의미

〈표 2〉 MMGPI의 등급 구분

구분	E	D	C	C+	B	B+	A
종합지수	35 이하	36~50	51~60	61~65	66~75	76~80	81 이상

2012년 평가결과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덴마크가 총점 82.9점으로 1위, A등급을 받음.

- 덴마크는 적정성, 지속가능성, 완전성에서 각각 78.1점, 86.0점, 86.4점의 높은 평가를 받아 MMGPI 평가 시작 이후 최초로 종합지수 80점 이상, A등급을 차지함.
  - 덴마크의 높은 평가결과는 높은 소득대체율과 적립률, 선진화된 연금제도, 우수한 자산구성 및 기여수준, 충분한 급여수준 및 법규 체계를 갖춘 사적연금제도 등에 기인함.
- B등급 이상을 받은 안정적인 연금시스템 국가는 네덜란드, 호주,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임.
- 상위권(A~B 등급) 국가의 공통점은 캐나다를 제외하고 퇴직연금 가입이 강제화 또는 준 강제화 되어 있으며,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의 부족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는 것임.

〈표 3〉 국가별 MMGPI와 순위 추이

연도별 순위				국가명	등급	종합지수	항목별 점수(괄호 안은 가중치)		
2012	2011	2010	2009				적정성(40%)	지속가능성(35%)	완전성(25%)
1	–	–	–	덴마크	A	82.9	78.1	86.0	86.4
2	1	1	1	네델란드	B+	78.9	77.0	73.0	90.3
3	2	4	2	호주		75.7	73.5	73.0	83.2
4	4	3	3	스웨덴	B	73.4	68.0	73.3	82.5
5	3	2	1	스위스		73.3	71.3	67.9	84.1
6	5	5	4	캐나다		69.2	74.2	56.3	79.3
7	6	6	5	영국	C+	64.8	68.1	46.5	85.0
8	7	7	7	칠레		63.3	50.1	67.7	78.4
9	10	10	6	미국	C	59.0	58.3	58.4	61.1
10	8	–	–	폴란드		58.2	63.6	43.4	70.1
11	9	8	–	브라질		56.7	71.5	26.9	74.8
12	13	11	–	독일		55.3	65.2	35.9	66.7
13	11	9	8	싱가폴		54.8	42.0	54.2	76.2
14	12	11	–	프랑스		54.7	74.3	32.0	55.2
15	16	14	10	중국	D	45.4	55.7	30.5	49.7
16	–	–	–	한국		44.7	45.1	42.3	47.5
17	14	13	11	일본		44.4	46.1	28.9	63.3
18	15	–	–	인도		42.4	37.4	40.7	52.8
MMGPI 평균						61.0	62.2	52.1	71.5

■ 반면, 우리나라는 적정성, 지속가능성, 완전성 평가에서 각각 45.1점, 42.3점, 47.5점의 낮은 평가를 받아 종합지수 44.7점, 16위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완전성 평가는 최하위를 차지함.

- 우리나라의 평가결과는 공사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낮은 사적연금 가입률과 저축률, 저출산 · 고령화의 인구구조, 미진한 GDP대비 자산비율, 사적연금의 수급권 보호 장치 미흡, 임의 가입방식의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의 지배구조, 사적연금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등에 기인함.
- 일본은 종합지수 44.4점, 17위로 평가되었으며, 낮은 평가결과는 저출산 · 고령화의 인구구조, 공 · 사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낮은 개인연금 가입률과 세계 최대의 국가 채무비율 등에 기인함.
- 중국은 종합지수 45.4점, 15위로 평가되었으며, 낮은 평가결과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 공 · 사연금 역할분담 체계 미흡, 사적연금의 낮은 가입률, 미진한 GDP대비 자산비율 등에 기인함.

■ 2012년 MMGPI 평가결과에서 우리나라가 연금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적정성 개선을 위해 고령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연금 지급 등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가입률 확대 및 가계 저축률 개선, 원리금보장성과 실적배당형의 균형적인 자산배분을 통한 노후소득재원의 효율성 확대가 필요함.
-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해 출산 및 고용확대를 통한 기여자 수급자 비율 개선,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제도 확충,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와 연금자산 규모 증대를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 사적연금의 연금형태의 지급 방식 의무화 등의 개선이 필요함.
- 완전성 개선을 위해 사적연금의 제3자 감시기능 등의 통제장치 강화, 퇴직연금 수탁자 책임 강화와 퇴직연금의 지급보장제도 확충 등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지배구조의 개선, 가입자 교육 및 투자성과 정보 제공 등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가 필요함. KiRi